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52
----------	-------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손 솔 · 전종덕 · 정혜경
한창민 · 김종민 · 전진숙
최혁진 · 임미애 · 용혜인
윤종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위원회 및 기금 관리·운영 등의 사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역신문과 언론의 매체 환경이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이용방식이 디지털 중심의 유통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금 용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을 명시

하여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5조제3호의2 신설 등).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의견을 들어”를 “의결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하기”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의견제시”를 “의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심의”를 각각 “의결”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

장이 아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3(감사) ①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역신문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준비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위원장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설립준비위원회의 명의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u>의견을 들어</u>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 ----- ----- ----- ----- <u>의결</u> <u>을 거쳐</u> ----- ----- -----.
②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u>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u> 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u>지원하기</u> 위하여 <u>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u>지역신문발전위원회</u>) ① ----- <u>위한 사업</u> <u>과 활동을 지원하기</u> ----- <u>지역신문발전위원회</u> ----- -----.
<u><신 설></u>	② <u>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u>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⑤ (생략)

<신설>

<신설>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2. (생략)
3.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제8조의2(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

-----.

1. -----
-----의결
2. (현행과 같음)
3. -----

-----의결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 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 원기준에 대한 <u>심의</u>	4. ----- ----- ----- <u>의결</u>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 기금 지원대상의 <u>심의</u> 및 실 제조사	5. ----- ----- <u>의결</u> -----
6. ~ 8. (생 략) ②·③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대우) <u>위원회</u> 위원 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 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 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대우) ① <u>위원장에</u> <u>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u> <u>이 아닌</u> ----- -----. ----- -----.
<u><신 설></u>	② <u>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으</u> <u>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u> <u>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u> <u>직할 수 없다.</u>
<u><신 설></u>	제12조의2(사무국) ① <u>위원회의</u> <u>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u> <u>국을 둔다.</u> ② <u>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u> <u>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u> <u>다.</u>

<u><신 설></u>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5. (생 략)	<u>제12조의3(감사) ① 위원회의 직 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 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u> <u>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임명한다.</u> <u>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u> 제15조(기금의 용도)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지역신문의 디지털 콘텐 츠 제작 및 유통 지원</u> 4. • 5. (현행과 같음)
---	--